

소비자

CONSUMER PRODUCT SAFETY EDUCATION

제품안전 교육

전 기 용 품 · 생 활 용 품 · 어 린 이 제 품

1



Product Safety

제품안전 관리제도

오프라인에서 안전정보 확인하기

Offline
safety information

2



www.safetykorea.kr
1600-1384



온라인에서 안전정보 확인하기

Online
safety information



3

KIPS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PART
1

소비자
제품안전교육

제품안전 관리제도



Contents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0
1-3. 리콜제도	14
1-4. 제품 사고 신고	18

1 제품안전 관리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 시장출시 전후를 기점으로 통합적인 제품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제품 시장출시 전 제품인증제도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 ② 제품 시장출시 후 시장감시제도 : 사고조사, 리콜, 안전성조사 등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해도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안법에 따라 전기용품 176개, 생활용품 68개 품목(2020. 7.기준)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 **높음**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위해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며, 제품 출시 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 받고, 관련 표시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 **높음**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마크 적용 절차



(인증번호)

제품 시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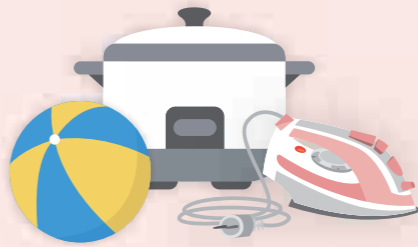
공장 심사

→

인증

→

판매



대상제품
 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예)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공기주입물놀이기구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고 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등 관련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	------	----------	----------

마크 적용 절차

제품 시험

→

신고

→

판매

대상제품
전기용품 66개, 생활용품 25개
예) 전기정수기, 노트북 컴퓨터,
일반용 자전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
------	------	----------	----------

마크 적용 절차

제품시험

→

전기용품(신고)

→

판매

제품시험

→

생활용품(신고X)

→

판매

대상제품
전기용품 73개, 생활용품 15개
예) 스마트폰, 번호표 발행기,
롤러스케이트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KC마크 및 신고번호 등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상 제품은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한 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KC마크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안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예시 : 섬유제품 표시사항

1. 섬유의 혼용률
 - 겉감 : 면 10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 국가기술표준원
3. 제조국명 : 한국
4. 제조연월 : 2020.XX.XX
5. 치수(cm)
6. 취급상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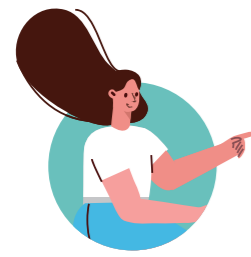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043-870-000)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 품목별 확인

안전기준 준수 여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및 해외에서 받은 안전 인증 등을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각 품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안경테, 가족제품 등 23개 품목

[품목별로 확인하기]



대상 제품은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하여, KC마크 표시 및 제품시험의무는 없지만 제품안전기준에 따른 사항(안전기준, 표시사항 등)을 준수 해야합니다.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하는 [쿠션]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캐릭터나 동물형상 등을 활용 = 어린이제품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하고 어린이와 상호 작용이 있으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

어린이제품을 판별할 수 있는 결정요소

결정요소	비고
제조업체의 설명	제조업자의 설명서, 제품의 표시라벨을 통해 어린이제품 여부 판별 (예 : 표시사항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하는지 여부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2.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기표시기) 3.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4.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5.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6.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품의 주요 용도	제품의 실제 용도
기타 요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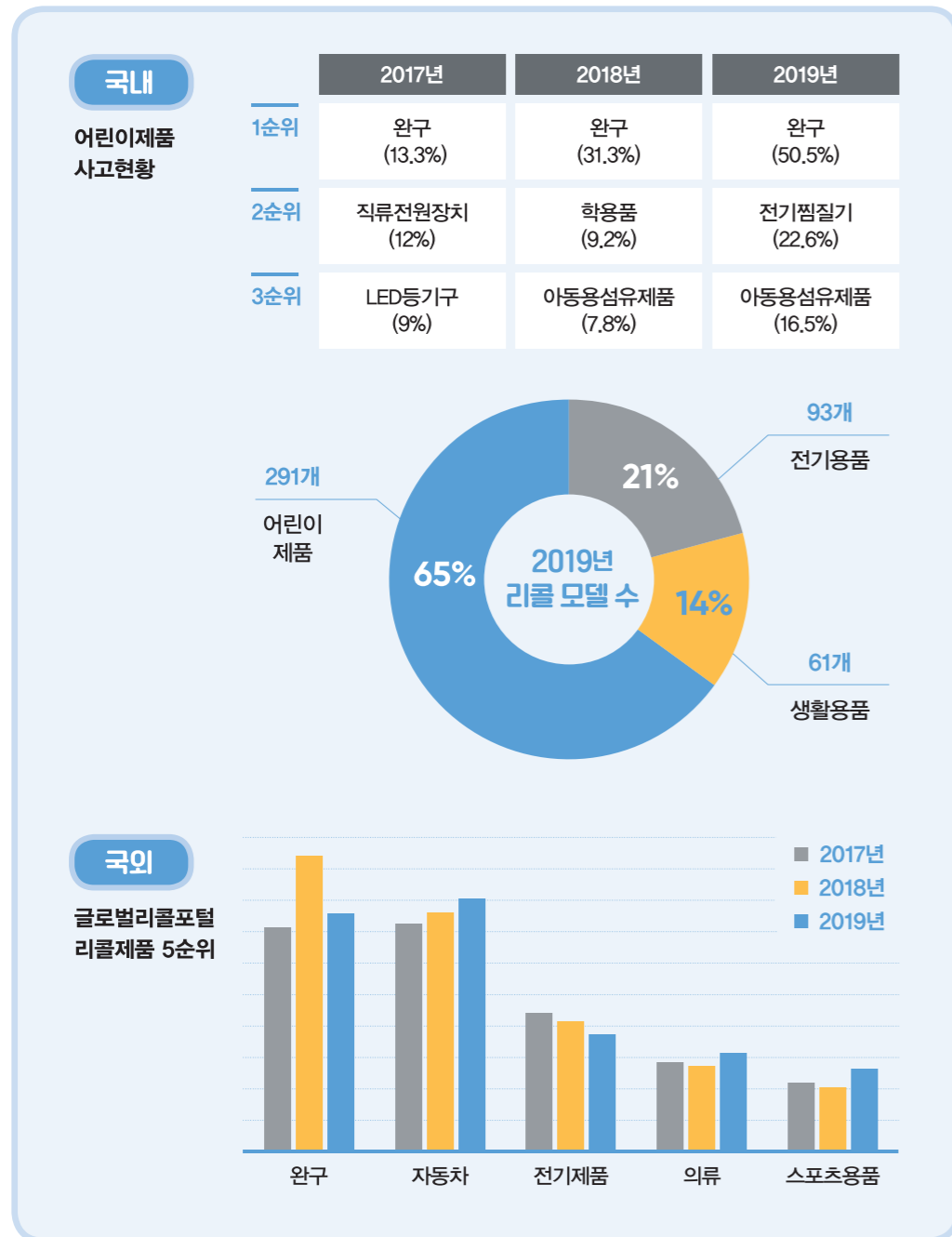
[어린이제품 제외 대상]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主)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제품
- 일반용도 제품(전 연령대상 제품),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 제품
- 타법에서 관리하는 품목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의품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제2조 제5호에 따른 용기 포장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기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시행된 이후로는 모든 품목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콜제도 이해해보기!



1-3 리콜제도

리콜제도란?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246개 제품을 조사하였으며
445개 제품이 리콜조치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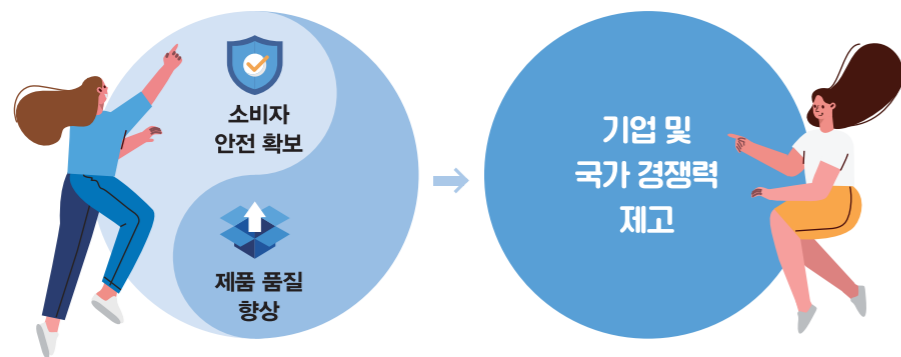


1-3 리콜제도

행정처분	전기용품 예시	생활용품 예시	어린이제품 예시
수거등의 명령 (리콜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내용이 최종결함 • 수거 환불 등의 리콜이행 • 언론 등에 공표 	품목 전기매트 사유 최고온도 부적합	품목 러닝머신 사유 비상정지 부적합	품목 유모차 사유 결합 방지 장금장치 부적합
수거등의 권고 (리콜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내용이 최종결함 • 수거 환불 등의 리콜이행 	품목 직류전원장치 사유 내화성 부적합	품목 전동킥보드 사유 최고속도 초과 부적합	품목 완구 사유 돌출부 부적합
개선조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내용이 최종결함 • 수거 환불 등의 의무는 없으며 부적합 내용 개선 후 출고가능 	품목 멀티콘센트 사유 기계적 강도 부적합	품목 스노보드 사유 바인딩부착 부위부적합	품목 노리개젓꼭지 사유 표시사항 부적합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근거하여 최종결함, 중결함, 경결함 결정

[리콜의 효과]



리콜공표시 소비자가 취해야할 행동 :

소비자는 확인하고 조치할 것

[리콜 공표문]

조치구분	수거 · 교환 등 명령			
리콜 제품	안전관리 대상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높음 위해도 낮음)		
	품목명	방한대 (아동용 섬유제품)	모델명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브랜드명	000	제조구분	제조(대한민국)
	사업자명	000	인증/신고번호	비대상
	대표자명	000	인증/신고일자	
위해 정도	제품결함	(최종결함) 노닐페놀(NP, NPEO) 3.8배 초과 - 부위 : 바인딩 흰색원단 - 측정값 : 384.5mg/kg - 기준치 : 총 함량이 100mg/kg 이하		
	위해정보	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무정자증, 기형아 및 성조숙증 유발 가능		
대처 방법	소비자 행동요령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문의처에 연락 · 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리콜 문의	문의처	000	연락처	000-0000-0000

1-4 제품 사고 신고

제품 사고 신고란?

제품안전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 시 행정기관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여 리콜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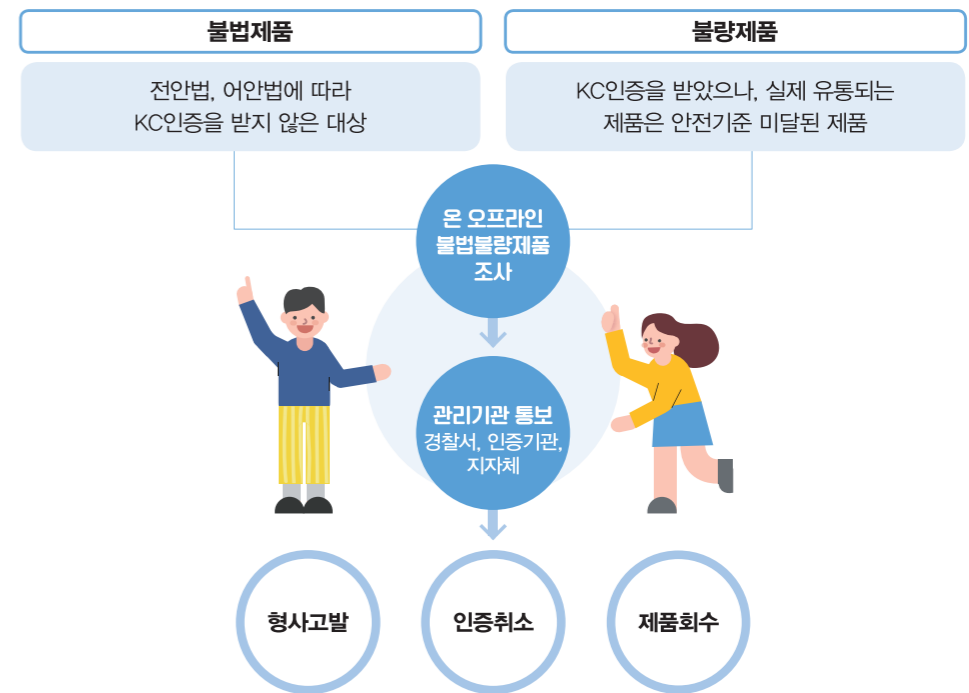


리콜제품 신고

방송, 구매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 리콜 소식을 접한 후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검색하여 리콜 대상임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처에 문의하여 조치사항, 접수 등을 안내 받아 제품수거·수리·교환 등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불량제품 신고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고발과 리콜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33-4010 www.kips.kr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해주세요.

PART
2

소비자
제품안전교육

오프라인에서 안전정보 확인하기



Contents

2-1. KC마크 찾기	22
2-2.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읽기	23



오프라인에서 KC마크를 확인하세요!



2 오프라인에서 안전정보 확인하기

2-1 KC마크 찾기

KC 인증마크란?

KC 인증마크는 'Korea Certification Mark'의 약자로, 730여개의 품목들을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마크'입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 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 적합함을 인증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KC 인증마크를 찾는 3가지 TIP

첫번째

제품 자체의 표시를 확인하자

입에 넣거나 삼키지 마세요

두번째

제품의 포장을 확인하자

KC마크는 이 제품군에 적합하였음을 아는 무관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세번째

제품에 별도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자

2-2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읽기

제품 구매 또는 사용 전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번호는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com)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② 주의 / 경고표시사항을 읽고 이에 맞게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③ KC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연령을 준수하고 주의사항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1. 품명:	7.전화번호:
2. 모델명:	8.제조국명:
3.제조년월:	9.사용연령: 3세 이상
4.제조자명:	10.주의사항:
5.수입자명:	
6.주소:	

PART
3

소비자
제품안전교육

온라인에서 안전정보 확인하기



Contents

3-1. 온라인 구매시 유의사항	26
3-2. 제품안전정보센터 활용법	27



온라인에서 KC마크를 확인하세요!



3 온라인에서 안전정보 확인하기

3-1 온라인 구매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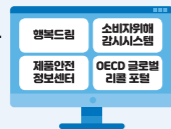
① 안전 문제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 신원정보가 명확하게 게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한 법률에 따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② 국내외 제품 리콜정보 제공 포털을 통해 결함 제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OECD글로벌리콜포털 (https://globalrecalls.oecd.org/)



③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해 안전인증 표시, 주의사항, 사용 제한 연령 등 제품 안전 정보를 확인합니다.

KC마크 등 인증정보가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④ 구매 후에는 가급적 사업자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해 리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정보를 제공 받도록 합니다.



⑤ 안전 문제 발생 시 판매자, 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3-2 제품안전정보센터 활용법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제품안전과 관련된 인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보급하여 제품 유통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 국내 위해제품정보, 해외 위해제품 정보, 리콜제품 검색 등 제품안전의 관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 사용 시 알아야 할 제품안전정보, 리콜정보, 이벤트 · 교육 등 소식을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ATS.SAFETY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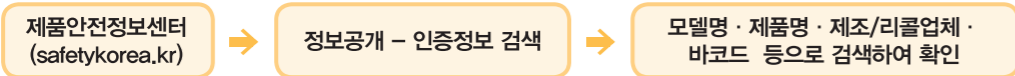


3-2 제품안전정보센터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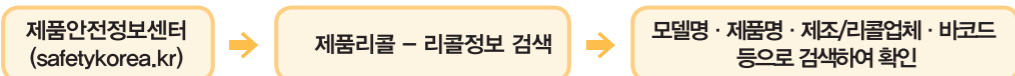
1 인증정보 검색

안전관리 대상제품을 구매 하기 전 안전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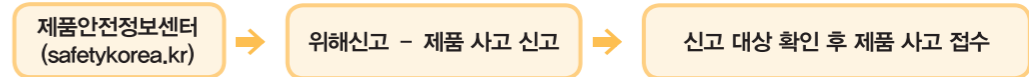
2 국내외 리콜정보 검색

구매한 또는 구매할 제품의 국내/국외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품사고 신고

공산품, 생활용품 등 사용 중 제품사고 발생 시 신고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및 리콜 조치 등에 활용 됩니다.



4 기타 제품안전 최신 소식 알림 등

보도자료, 제품안전 간행물, 교육 알림 등 제품안전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